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가. <보건식품 기능성 설명 표시 규범화에 관한 공고>(2018년 제23호) 관련 문의에 대한 해독

2018년 2월 13일, 원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보건식품 기능성 설명 표시 규범화에 관한 공고>(2018년 제23호)를 발표했으며, 보건식품 기능성 설명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밝혔음. 1. 식용 및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보건식품의 라벨 및 설명서에 "본 제품은 동물실험평가를 통과했음"이라는 말을 넣어야 함. 2. 그 전에 허락받고 판매하고 있는 보건식품 생산기업들이 해당 보건식품의 라벨 및 설명서를 다시 인쇄할 때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라벨 및 설명서를 수정해야 함. 2020년 연말까지 모든 보건식품 라벨 및 설명서는 이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함. 3. 2021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라벨 및 설명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보건식품 기능성 설명 표시 규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함 :

1. 식용 및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보건식품(영양소 보충제 제품 제외)은 라벨 및 설명서에 "보건기능" 항목란에 보건식품 기능 설명 전에 "본 제품은 동물실험평가를 통과했음"이라는 말을 넣어야 함. 예: "[보건기능]본 제품은 동물실험평가를 통과했으며, ***보건기능을 가지고 있음".

2. 그 전에 허락받고 판매하고 있는 보건식품의 보건기능은 식용 및 평가를 통과한 것이면 새로운 평가기술요구 및 표시규정을 발표하기 전의 기존 보건기능 설명이 적용됨.

여러 가지 보건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식품은 동물실험평가 및 식용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의 요구대로 각각 표시해야 함. 예를 들면, 보건기능"A"는 동물실험평가만 통과하고 보건기능"B"는 식용 및 평가만 통과하고 보건기능

"C"는 동물실험평가 및 식용평가를 통과했음. 따라서 표시할 때 "[보건기능]A, B, C (동물실험평가를 통과했으며, A의 보건기능을 가지고 있음)"이라 해야 함

3. 영양소 보충제 제품은 동물실험과 식용평가와 연관되지 않아서 보건기능 설명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 "[보건기능]***영양소를 보충해 줌"이라고 표시하면 됨

4. 신청자가 공고의 요구에 따라 라벨, 설명서를 수정하고 해당 내용 변경에 대해 변경신청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5. 공고의 제3조에 언급한 "2021년 1월 1일부터"란 것은 위의 요구에 따라 라벨, 설명서를 수정하지 않은 보건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감일을 가리키는 것임

자료원: 시장감독관리총국(원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날짜: 2018.4.17

출처: http://samr.saic.gov.cn/xw/yw/wjfb/201804/t20180417_273799.html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가. 통관거부사례(2018.3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 사항
3월	1704900000	크라운 땅콩카라멜	48	상하이	식품첨가제 비타민E 규정초과	반송 또는 소각
	1704900000	롯데 말랑 카우	56.45	상하이	식품첨가제 비타민E 규정초과	
	2103909000	김치용 조미유	15	상하이	필요한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2103909000	김치용 조미유	15	상하이	필요한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8.5.7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1818990/index.html